

[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]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변경 내용을 공시합니다.

1. 대상 투자신탁 :

집합투자기구 명칭(종류명 명칭)	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
iM 에셋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(H)	AF567

2. 주요 변경 내용

-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사항 반영(14.15%→ 14.29%)
-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개정사항 반영
- 정기결산에 따른 내용 갱신

3. 변경 대상 서류 :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

4. 변경 시행일 : 2025년 03월 18일

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및 해당 판매회사 본점 및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변경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는 당사 홈페이지(www.im-fund.com) 및 해당 판매회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

[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	-	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수익률)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
운용전문인력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추가	신설	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사항 반영 (14.15%→ 14.29%)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개정사항 반영 정기결산에 따른 내용 갱신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	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 사항 반영	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4등급(보통위험)으로 분류 하였습니다. [최근 결산일 기준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(97.5% VaR 모형 사용): <u>14.15%</u>]</p> <p>※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(97.5% VaR 모형 사용) (표 생략)</p> <p><u>주1)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투자신탁으로 실제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 일</u></p>	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4등급(보통위험)으로 분류 하였습니다. [최근 결산일 기준 <u>과거 3년간 펀드의</u>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(97.5% VaR 모형 사용) : <u>14.29%</u>]</p> <p>※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(97.5% VaR 모형 사용) (표 현행과 같음)</p> <p><u>주1)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투자신탁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</u></p>

	<p>간 수익률에서 2.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($\sqrt{250}$)를 곱해 산출)을 고려하여 투자위험등급을 분류 하였습니다. 따라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주2) VaR(Value at Risk)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. 상기 표상 VaR값 00%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00%의 손실(신뢰구간 97.5%)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</p> <p>주3)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</p> <p>주4)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으로 인해 수익구조가 현저히 달라져 과거 수익률 변동성이 현재 펀드의 위험도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 시점에서 펀드가 신규로 설정된 것으로 보아 위험등급을 다시 산정합니다.</p> <p>주5) 모자형 구조의 경우 자펀드는 자펀드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</p> <p>주6) 종류형 펀드인 경우 해당 운용 펀드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</p> <p>주7) 재간접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</p> <p>주8) ELF, 레버리지ETF, 인버스ETF, 부동산 펀드 등과 같이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·복잡한 경우에는 수익률 변동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(이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는 수익구조·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)</p>	<p>일간 수익률 에서 2.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($\sqrt{250}$)를 곱하여 산출)을 고려하여 투자위험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. 따라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주2) VaR(Value at Risk)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. 상기 표상 VaR값 00%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00%의 손실(신뢰구간 97.5%)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</p> <p>주3)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</p>
--	--	--

		<p>주9)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한 결과, 그 값이 위험등급 경계구간에 있는 경우이거나 위험등급이 매년 계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등 투자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을 덜 위험한 등급으로 하향 변경하지 않고 현재의 높은 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설</p>	<p>※ 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수익률 변동성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에서 2.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($\sqrt{250}$) 을 곱하여 산출한 97.5% 신뢰수준의 VaR(Value at Risk) 모형을 사용합니다.</p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 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내용	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	-	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개정사항 반영	<p>나. 과세 (1) (생략) ② 다만, <u>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</u>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 $\text{환급세액} = \text{외국납부세액} \times \text{환급비율}$ </div> <p>* 환급비율: $(\text{과세대상소득금액} / \text{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})$ 단, 환급비율이 >1 이면 1, 환급비율이 <0 이면 0으로 함</p>	<p>나. 과세 (1) (현행과 같음) ② 다만, <u>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, 원천징수 의무자인 판매사가 수익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 (이자·배당소득)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(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)</u></p>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	-	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
2. 연도별 설	재무제표 확정	-	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

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 구의 운용실 적	정에 따른 내 용 갱신		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 자에 관한 사 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 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

[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투자비용	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	-	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수익률)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
운용전문인력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